

의안번호	제 39 호
의결연월일	2004. 10.

사천시민자유차사업심의위원회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제출자	사천시장
제출년월일	2004. 10. 4

법무통계담당주사 심사필

#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의안 번호	제 39 호
----------	--------

제출일자	2004. 10.4
제 출 자	사 천 시 장

## 1. 의결주문

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

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과 괴리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,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·보완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내용

가. 조례의 근거 법령을 정비함

-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 
⇒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

나. 위원회의 부위원장을 변경함

- 기획담당관 ⇒ 위원중에서 호선

다.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를 정비함

- 민자유치사업 ⇒ 민간투자사업

## 4. 주요토의과제 : 해당사항 없음

## 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따로 붙임

나. 예산조치 : 해당사항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사항 없음

라. 기 타

1) 신·구조문 대비표 : 따로 붙임

2) 입법예고(2004. 8. 31 ~ 2004. 9. 20)결과 제출된 의견 없음

3) 규제심사 : 해당 없음

## 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(안)

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중 “민자유치사업” 을 “민간투자사업”으로 한다.

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제2항중 “기획담당관이 된다” 를 “위원중에서 호선한다”로 하고, 제2조제3항 및 제4조제1호·제4조제5호중 “민자유치사업” 을 각각 “민간투자사업”으로 하며, 제4조제2호중 “민자유치시설사업”을 “민간투자사업”으로 한다.

제7조중 “민자유치사업담당주사” 를 “민간투자사업 업무담당주사”로 하고, 같은조중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제4조제3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개별 사업에 관한 사항의 심의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제7조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4조제7항의</u> 규정에 의하여 <u>사천시민자유치사업심의위원회</u>(이하 “위원회”라 한다)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제2조(구성) ① (생략)</p> <p>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<u>기획담당관이 된다.</u></p> <p>③ 위원은 <u>사천시의회의원과 관계공무원</u> 그리고, <u>민자유치사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</u>중에서 <u>사천시장</u>(이하 “시장”이라 한다)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한다.</p> <p>제4조(기능)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민자유치사업과</u> 관련한 주요시책 수립에 관한 사항</li> <li>2. <u>민자유치시설사업</u> 기본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</li> <li>3. (생략)</li> <li>4. (생략)</li> <li>5. 기타 <u>민자유치사업의</u>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</li> </ol> <p>제7조(간사 등)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두며, 간사는 <u>민자유치사업담당주사</u>가 된다.</p>	<p>제1조(목적) ..... <u>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민간투자법 제6조제4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4조제9항</u>.....  <u>“사천시민간투자사업심의위원회”</u>.....            .....</p> <p>제2조(구성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.....            ... <u>위원중에서 호선한다.</u></p> <p>③ .....            ..... <u>민간투자사업</u>.....            .....</p> <p>제4조(기능) .....            ..... 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민간투자사업</u>.....</li> <li>2. <u>민간투자사업</u> .....</li> <li>3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4. (현행과 같음)</li> <li>5. .... <u>민간투자사업</u>.....</li> </ol>           .....</p> <p>제7조(간사 등) .....            .....<u>민간투자사업업무담당주사</u>..... 다만, <u>제4조제3호 내지 제5호의</u> 규정에 의한 개별 사업에 대한 <u>민간투자에</u> 관한 사항의 심의는 해당 업무 담당주사가 간사가 된다.</p>

## 관 계 법 령 발 취

<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> [일부개정 2003.12.30 법률 제07016호]

第6條(審議委員會의 구성 및 운영) ①審議委員會는 企劃豫算處長官 및 社會間接資本施設의 業務를 管掌하는 행정각부의 차관과 企劃豫算處長官이 위촉하는 8人이내의 民間投資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民間委員으로 구성한다.<개정 1999.5.24, 2002.12.11>

②企劃豫算處長官은 審議委員會의 委員長(이하 "審議委員長"이라 한다)이 된다.<개정 1999.5.24>

③審議委員長은 審議委員會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전문적·技術的인 분야에 관한 諮問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關係專門家로 구성되는 民間投資事業諮問委員團을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

④주무관청의 장은 民間投資事業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民間投資事業에 관한 사항을 審議하는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를 자체적으로 구성·운영할 수 있다. <개정 2002.12.11>

⑤審議委員會와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운영·절차등 기타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. <개정 2002.12.11>

<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투자법시행령> [일부개정 2003.2.24 대통령령 제17928호]

제4조(심의위원회의 운영등) ①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며, 심의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.

②심의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심의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③심의위원장은 심의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, 그 의장이 된다.

④심의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,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⑤심의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를 출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기관·단체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.

⑥위촉위원과 심의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관계전문가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⑦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심의위원장이 정한다.

⑧제1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은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 심의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.<개정 2003.2.24>

⑨이 영에 규정한 것외에 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주무관청별심의위원회의 구성·운영 및 절차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주무관청이 정하여 고시한다. 다만, 주무관청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<개정 2003.2.24>